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0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서삼석·박희승·임호선

윤준병 · 송옥주 · 복기왕

이병진 • 박수현 • 위성곤

박지원 • 정준호 • 문대림

정진욱 · 김영진 · 김문수

안도걸 • 조계원 • 이원택

신영대 · 강준현 · 이개호

의원(2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며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가 부족하여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능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2 및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이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중 미곡
- 2.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중 맥류
- 3. 마늘 · 양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소류
- 4. 김ㆍ미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조류
- 5. 전복·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패류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친 후 고시

하여야 한다.

- 1.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목
- 2.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목별 목표가격
- 3.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목별 최저가격
-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한다.
- ④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목 외에 별도의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목, 목표·최저 가격 및 보고서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재 정 안 제16조의2(농수산물 최저가격보 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이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 는 제도(이하 "농수산물 최저 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하 여야 한다. 1.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양곡 중 미곡 2.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양곡 중 맥류 3. 마늘・양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소류 4. 김・미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조류 5. 전복・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패류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는 농수산물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 1.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목
- 2.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 목별 목표가격
- 3.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 목별 최저가격
-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심의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농수 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목 외 에 별도의 품목을 대상으로 최 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야 한다.
- ⑤ 그 밖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품목, 목표·최저 가격 및 보고서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 1. ~ 4. (생 략)

<u><신 설></u>

<u>5.</u> (생 략)

③ ~ ⑤ (생 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2) -----

- 1. ~ 4. (현행과 같음)
- 5.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지원
-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